

아이 드 블랑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1929
[가맹본부 인터넷주소]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1-08-24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09-24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토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식회사 토 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 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시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 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204(고잔동)]
[대표전화번호: 1577-9111]
[대표팩스번호: 031-624-4788] [가맹관리팀: 1577-911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 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내용
상호	(주)토리
사용브랜드	아이드블랑 외 1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204(고잔동)
법인 설립등기일	2011.08.17
사업자등록일	2011.08.22
대표자	이영주
대표전화번호	1577-9111
대표팩스번호	031-624-4788
법인등록번호	134911-0049197
사업자등록번호	140-81-55476

2.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사내이사(대표자)	이영주	아이드블랑 외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204(고잔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주	1577-9111	031-624-4788
사용인(임원) 비등기이사	강제명	아이드블랑 외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204(고잔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주	1577-9111	031-624-4788
사용인(임원) 비등기이사	강성섭	아이드블랑 외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204(고잔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주	1577-9111	031-624-478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아이드블랑]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 칭	아이드블랑	헤어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곳
상 호	아이드블랑 00점	당사는 해당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아이 드 블랑	서비스 표 등록번호 : 40-1617770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전 3개 사업연도 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전 3년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054,961	3,030,214	2,024,747	5,112,468	389,881	345,808
2022년	6,696,193	3,959,803	2,736,389	5,774,384	822,158	731,642
2023년	5,804,137	2,669,575	3,134,562	5,721,415	633,049	418,172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영주	사내이사	2011.8 ~ 현재	사내이사	가맹사업총괄
	강제명	비등기이사	2011.8 ~ 2014.8	본부장	가맹관리담당
			2014.8 ~ 현재	전무이사	
	강성섭	비등기이사	2014.1 ~ 현재	이사	교육운영담당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1	1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토리	가맹사업경영	2011.08.22. ~ 현재	“토리헤어” 라는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40109)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아이 드 블랑 (상표권)	가맹점 상호로 사용	출원일 2020.01.14. 등록일 2020.06.22	출원번호 40-2020-0006786 등록번호 40-1617770	이 영 주	2030.06.22

* 당사는 상기 상표의 권리인이며 당사의 대표이사인 “이영주”로부터 등록 만료일까지의 상표 사용 허락을 득하였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가맹본부의 [아이드블랑] 가맹사업 현황

1. [아이드블랑]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1년 1월 1일(1호점 오픈일)

(직영점을 시작한날: 해당없음)

2. 당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토리	아이드블랑	이영주	2021 년 1 월 1 일 ~ 2021 년 9 월 23 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1108호(관양동, 효성인텔리안)
(주)토리	아이드블랑	이영주	2021 년 9 월 24 일 ~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204(고잔동)

3. [아이드블랑] 업종

영업표지	업종	
아이드블랑	대 분류	소분류(소분류)
	이/미용	이/미용 서비스

4. 바로 전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아이드블랑]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9	9		22	22		34	34	
서울	-	-		1	1		3	3	
부산	-	-		2	2		2	2	
대구	4	4		6	6		7	7	
인천	1	1		2	2		2	2	
광주	1	1		1	1		1	1	
대전	1	1		2	2		2	2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	-		4	4		7	7	
강원	-	-		-	-		-	-	
충북	-	-		1	1		2	2	
충남	1	1		2	2		4	4	
전북	-	-		-	-		-	-	
전남	-	-		-	-		-	-	
경북	1	1		1	1		4	4	
경남	-	-		-	-		-	-	
제주	-	-		-	-		-	-	

5. 바로 전 3년간 [아이드블랑]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증감
2021	-	9	-	-	-	9	+9
2022	9	13	-	-	-	22	+13
2023	22	14	-	2	1	34	+8

6. [아이드블랑]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가맹본부	(주)토리	토리헤어	20140109	이/미용	218/0	197/0	172/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아이드블랑]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 년 말 가맹점 수	2023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매출액	면적3.3㎡당 매출액	상한	면적3.3㎡당 매출액	하한	면적3.3㎡당 매출액	
전체	34	305,706	5,454	540,236	13,317	144,810	2,737	29곳 산정
서울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7	298,931	5,203	435,519	7,102	144,810	2,811	7곳 산정
인천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7	266,731	3,985	342,257	6,105	172,481	2,737	6곳 산정
강원	-	-	-	-	-	-	-	-
충북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4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4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상기 매출액은 2023년 12월 기준 당사의 34개 가맹점 중, 2023년 7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5개

가맹점(신방점, 신방화역점, 도량점, 형곡점, 수원터미널점)을 제외한 총 29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로 물품 공급 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 가맹점 사업자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사업연도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년	34곳	568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토리헤어 및 아이드블랑]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4]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32,089	 (비공개)	(비공개)	
광고		(비공개)	32,089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촉		(비공개)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논현동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68	02-3453-2263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 용
인터넷뱅킹 이용 시	신한은행 계좌있는 사업자	신한S뱅크 : ①개인뱅킹로그인 -> ②전체메뉴 -> ③ 간편출금, 결제/가맹금예치->④ 가맹금예치제서비스-> ⑤서비스가입 인터넷뱅킹 : ①금융서비스->②기타서비스->③가맹금예치제서비스->④가맹점사업자서비스가입*인터넷뱅킹 가입이 선행되어야 함
	신한은행 계좌없는 사업자	신한은행 계좌 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영업창구 이용 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명입력 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 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 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신한은행과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드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아이드블랑]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52,499~205,899]천원(※[148.5 ~ 231]㎡ 기준)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이드블랑]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

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2,10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 시	가맹점 오픈 이전 해지시 일부 반환 단, 가맹점 오픈 이후에는 최초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미경과일분은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으로 오픈 이전에 소멸되는 비용임	위약벌 상계 처리 후 반환
교육비	1,100	계약 체결 후 오픈일 까지	교육시작 1일 전 계약해지	영업개시 전 교육 및 시스템지도로 소멸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 전 교육비는 일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계약체결 시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
계약이행보증금	5,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 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17,100	11,600
가맹비	11,000	5,500
교육비	1,100	1,100
보증금	5,000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천원)	면적 3.3 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35,289 ~ 188,689]	[3,006 ~ 2,695]			45 평 ~ 70 평 (148.5 ~ 231 m ² 기준)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협력업 체 외 1개사	~ 84,150 (~148m ² 미만)	1,870	내부 인테리어 공사시작 3일 이후	공사 발주 전 계약해지	매장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상이
		79,200 ~ 123,200 (148 m ² ~231 m ²)	1,760			
		115,000 ~ (231 m ² 초과)	1,650			
간판	협력업 체 외 1개사	11,000 ~ 27,500	-	공사시작 3일 이후	공사 발주 전 계약해지	
설비 및 기기	협력업 체	11,000 ~ 16,500	-	설치 3일 전	설치 전 계약해지	
삼푸대, 의 탁자	협력업 체 외 1개사	10,450 ~ 11,000	-	설치 3일 전	공사 발주 전 계약해지	
POS	협력업 체	1,089		설치 3일 전	설치 전 계약해지	
초도 상품비용	가맹본부	17,600	-	물품 공급일 3일 전	공사 발주 전 계약해지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인테리어, 필요설비/정착물에는 전기승압장치, 외부환풍, 자동문, 강화유리, 소방설비, 철

거, 온수시설 등의 시설공사와 냉난방기기, 컴퓨터, 음향장비, 냉장고, 세탁기, 커피머신, 제빙기 등의 설비류 구입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별도비용(계약체결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 이 부담됩니다.]

[당사는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점포 미 보유 시: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최적의 입지도출 → 가맹희망자가 최종의사결정 점포 보유 시: 최소점포기준 148.5㎡ (약 45 평)-> 현장조사 등 시장분석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통보. ※당사는 가맹희망자 에게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최저 실면적 148.5㎡ 이상의 점포를 소유 및 임차
종업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경력별채용, 역량진단 및 평가 후 당사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당사 가맹점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직원채용으로 말미암아 그 직원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존 또는 인근 지점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의 조정판정에 따라야 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아이드블랑]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없음 (당사는 일시불로 가맹금을 납부 받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교육훈련비, 리모델링 비용,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불가 사유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로열티)	가맹본부	880 / 월	익월 25 일	해당없음 (후불제)	해당없음 (후불제)	-
리스료	-	-	-	-	-	-
광고 분담금 (26p 참조)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 년간 광고를 하지않은 경우	광고 집행 시 반환 안됨	V. 9. 광고 및 판촉활동 참조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	분담금 납부후 1 년간 판촉을 하지않은 경우	광고 집행 시 반환 안됨	V. 9. 광고 및 판촉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 내용에 따라 실비부담	교육 실시 10 일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 시 지급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없음	-	-	-	-
POS	협력업체	33 / 월	지정업체와 협의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외 1개사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나머지	간판변경 후 2 일이내	-	-	부득이한 경우 변경 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시설 및 각종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협력업체 외 1개사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나머지	교체 보수후 5 일이내	-	-	교체, 보수 필요 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공급사와 협의 후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15%]	지급기일	후불로	-	-

			익일부터	반환 없음		
상품 공급비	가맹본부	공급가	주문 시 선결제	상품 미공급시 반환	검수 후 반환되지 않음	[별첨 2] 비품참조

[당사의 정기납입경비(로열티)는 매장의 매출현황, 입지상황 등으로 고려해 상호 합의 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매출증빙, 지출 증빙 등 가맹점사업자가 요청하는 일체의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의 광고분담금 및 교육훈련비는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실비지급을 하고 분담금이나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2023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위생처리	가맹점사업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감독	수시	문의: 가맹관리부 (031- 1577- 9111)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정착물을 비롯한 각 종 설비 관리 상태 점검	수시	문의: 가맹관리부 (031- 1577- 9111)
제품 및 상품 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제품 및 상품의 보관상태, 관리 상태 등 점검	수시	문의: 가맹관리부 (031- 1577- 9111)
가맹본부 운영 지침 준수	타사제품 취급, 운영매뉴얼의 이행 여부, 교육·훈련 등 점검	수시	문의: 가맹관리부 (031- 1577- 9111)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께서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과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 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아이드블랑] 운영권을 계약기간 중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쥬토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양도양수가맹비(550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500만원, 부가세 없음)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110만원 부가세포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1,100만원, 부가세포함), 보증금(500만원, 부가세 없음), 교육비(110만원, 부가세포함)를 납입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2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 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 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중도해지를 포함한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아이드블랑 임을 알수있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등록 및 온라인포털 사이트 내 지역정보)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와 관련한 운영 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 정보 등의 사용을 중단 및 반환을 하고,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제2항 규정 외 보유하고 있는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⑤ 귀하는 공급받은 상품 중에서 하자가 없는 상품은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사는 주문 당시의 공급가격을 그 대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하자가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반환여부 및 그 가격을 정합니다.
- ⑥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⑦ 계약 만료, 해지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귀하는 공급된 상품 등 중에서 정상품을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상태를 감안하여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상환가격을 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아이드블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별첨 3] 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 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아이드블랑]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당사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해당없음]

2) 당사가 [아이드블랑]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해당없음]

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첨 4]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없음	1 회 위반 : 구두경고 2 회 위반 : 2 회이상 서면 시정요구 3 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서비스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 없음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4] 참조	[별첨 4] 참조	홈페이지 공지	2023. 12 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아이드블랑]을 추가 설치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미용업종(미용실 영업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동일업종의 영업표시를 가진 당사 및 계열사의 가맹사업을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 미용 업종(미용실 영업운영)	[아이드블랑] [토리헤어]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재조정(변경)가능 여부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가맹계약서 별첨 내 표기지역을 기준으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하며,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점포로부터 반경 200M으로 한다. ※ 대규모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및 유통집객시설의 경우 별도 기준의 영업지역이 부여된다.	계약서 별첨에 구역(지도)으로 표시 (상호 합의된 별첨이 있을 경우 그 영업지역으로 한다.)	가맹점사업자 동의 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사유발생 →당사 담당 팀검토 → 영업지역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아이드블랑”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100%	-	-	-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년	100%	-

☞ 당사는 가맹점 외 온라인 채널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아이드블랑]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 년도 12.31일까지입니다. 최초 계약 종료 후 갱신. 연장 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가맹계약서 제 8조 제4항에 따름)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조 2 항 1 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8 조 2 항 2 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8 조 2 항 3 호 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8 조 2 항 3 호 나목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8 조 2 항 3 호 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조 2 항 3 호 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16 조[가맹금]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9 조 1 항 1 호
2. 귀하가 당사에 대한 상품대금 결제 및 로열티를 2 회 이상 연체 및 채무불이행의 경우	39 조 1 항 2 호
3. 귀하가 지정된 영업장소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39 조 1 항 3 호
4. 귀하가 임의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거나, 당사의 사전 승인없이 가맹점을 이전한 경우	39 조 1 항 4 호
5.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23 조를 위반하여 “갑”의 시정요구를 3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39 조 1 항 5 호
6.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24 조 [필수원부자재] 제 1 항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하거나, 제 2 항을 위반하여 “갑”이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39 조 1 항 6 호
7. 귀하가 당사의 상호·상표·서비스 표 등 일체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9 조 1 항 7 호
8.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25 조 [영업의 표준화] 내지 제 35 조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9 조 1 항 8 호
9.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44 조[영업의 양도] 제 4 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사업자 간 영업 양도·양수를 하였을 경우	39 조 1 항 9 호
10.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39 조 1 항 10 호
11. 귀하가 영업비밀유지의무(제 20 조) 또는 경업금지의무(제 21 조)를 위반한 경우	39 조 1 항 11 호
12.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营业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한 경우	39 조 1 항 12 호
13. 귀하가 가압류·가처분(단순 채권 보전인 경우 제외), 조세채납처분 등을 받은 경우	39 조 1 항 13 호
14.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주관하는 점주회의에 경우 2 회 이상 불참 하거나, 직원 기술 교육에 3 회 이상 불참 할 경우	39 조 1 항 14 호
15. 귀하가 “본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9 조 1 항 15 호
16.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게 해지권이 유보된 경우	39 조 1 항 16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40 조 1 항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40 조 2 항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0 조 3 항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40 조 4 항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0 조 5 항
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40 조 6 항
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0 조 7 항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40 조 8 항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40 조 9 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47조 1호
2.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7조 2호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영업팀 (1577- 9111)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 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상속인(대리, 수탁인 포함) 가맹본부의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110 천 원 (부가세포함)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 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 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한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지역 내에서 귀하가 [아이드블랑]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미용 업종 (미용실 영업운영)	해당 없음	문의: 가맹관리부(1577-9111)

또한, 계약 종료 / 해지 후 2년 간 동일 영업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아이드블랑]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2:00 (매장에따라협의가능)	주 7일 권장	문의: 가맹관리부 (1577-9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강사)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시기	담당 팀	비고
위생관리(4 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영업팀	
고객응대(5 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영업팀	
품질관리(7 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영업팀 물류팀	
가맹본부 운영지침 준수(5 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가맹본부 운영지침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영업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 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아이드블랑]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행 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50% 중 가맹점 총 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광고 계획공고 →광고참여부결 정->가맹점 부담액제시 (명세서)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각 가맹점사업자가 해당분기에 부담해야할 광고비를 그 분기 전달말일까지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 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분담한다.	대중매체광고 명절, Day이벤트 행사(전국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50%	50%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행 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50%	판촉행사계획공고 ->가맹점행사 참여결정->행사시행-> 종료후 최종분담금확정	판촉행사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80% 이상의동의시 전체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50%	증정상품 출하가50%	“	“

	판촉물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50 %	판촉물 제작비용50%	“	“
	매장개별 행사	가맹점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시행 및 부담		“	월별 판촉 행사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 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해서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 제20조 [비밀유지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영업상비밀이나 노하우를 본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표준 인테리어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를 “갑”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별 내지 손해배상예정액 사유	관련
-------------------	----

계약조건문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2조 제3항 내지 제8항
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본부에 위약금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20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제21조(경업금지 의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 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 일금이천만원(₩20,000,000) 또는 잔여계약일에 대한 위약금(잔여계약일 × 일금삼만원(₩30,000원))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일일부터 위약별로 1일 금 이십만원(₩200,000)씩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는 배상의 무가 있다.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43조 제1항
본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또는 귀하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약별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최초가맹금의 10%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최초가맹금의 30%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최초가맹금의 50%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148.5평방미터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 일 내 외	8p ~ 10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설명.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실시	
가맹계약 체결	- 개설승인 - 가맹금 예치 안내	D-34~30	9p 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D-27~25(3 일)	
실내 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 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미용집기류 구매 등	D-24~5(20 일)	10p 참조
홍보 및 교육 실시	- 홍보 및 판촉진행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2 일)	
점 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예치가맹금 수령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 입점시 상기의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02-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 관할 소재지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합의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Ⅶ.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1) 점포의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3)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40%

4) 지급절차

-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할지급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등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30%,

2차:1차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5)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 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 없음				
판촉장려금	해당 없음				
판촉지원	해당 없음				
판매용집기 무상대여	해당 없음				
반품지원	해당 없음				
마일리지	해당 없음				차후 진행 시 사전협의
CRM	해당 없음				
테스터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 관 리 위생 관리, 교육 훈련 회계등가맹점운영 전 반 에 대 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 용, 기간, 경영진단및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담당자가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팀 (1577-9111)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 관 리 위생 관리, 교육 훈련회계등가맹점 운영 전반에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 는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관리팀 (1577-9111)

4.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는 [아이드블랑]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 상 지원내용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	-	-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아이드블랑]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오픈) 교육	아이드블랑 워크시스템 POS 사용, 접객기술, 리더십	집합 교육, 출퇴근교육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필수 교육
수시교육	입점교육 (서비스역량향상) 관리자핵심역량개발, (NCS 기반, 고객관리, 마케팅, 리더십)	집체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필요시 이수 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	가맹점주 분기 세미나 가맹점 신입사원	집체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요시 이수 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아이드블랑]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부가세포함)	비고
최초(오픈) 교육	2일 이상(매장기준)	1,100	최초 계약 시 이수 (지방일 경우 숙박비 교통비, 별도) / 필수이수
신입사원교육	3시간 (1인기준)	22	필요시 이수
수시(기술) 교육	1일~4일 1일(3시간~6시간)	110 ~ 1,100	필요시 이수
정기오너 세미나 (정기교육)	1일 3(시간)	교육내용에 따라 비용 발생 시 실비부담	매년 필수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가맹점 개점 전까지 최초오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14조 에따라 가맹점 개점 승인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교육, 수시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매장명	소재지
1	-	-	-
2	-	-	-
3	-	-	-
4	-	-	-
5	-	-	-

2023년 12월 기준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	-

2023년 12월 기준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23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2023년 12월 기준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1577-911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당사의 홈페이지[www.toryhair.co.kr]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 재무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 설비 및 기기] ※ 거래상대방 : 그리에이트(차액가맹금 : X), 거래형태 권장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첨 2 - 공급품목(원·부재료)] ※ 거래상대방 : 가맹본부(차액가맹금 : 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첨 3 -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 - 상품]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디자인 컷	12,000	여성 일반 스탠다드 펌	33,000
주니어 컷	9,000	여성 일반 프리미엄 펌	44,000
베이비 컷	12,000	여성 일반 시그니처 or 산성펌	55,000
익스텐션 컷	18,000	여성 셋팅 디지털 스탠다드	44,000
프린지 컷	1,000	여성 셋팅 디지털 프리미엄	55,000
부분다운펌	11,000	여성 셋팅 디지털 시그니처or산성펌	66,000
아이롱다운펌	22,000	여성 매직 스탠다드	55,000
맨즈 스타일링	8,000	여성 매직 프리미엄	66,000
우먼 스타일링	12,000	여성 매직 시그니처 or 산성펌	77,000
익스텐션 스타일링	15,000	여성 볼륨매직 스탠다드	66,000
일반샴푸	5,000	여성 볼륨매직 프리미엄	77,000
프린지펌	5,000	여성 볼륨매직 시그니처or산성펌	88,000
프린지 볼륨매직	10,000	여성 매직셋팅 스탠다드	88,000
뿌리염색 스탠다드	22,000	여성 매직셋팅 프리미엄	99,000
뿌리염색 시그니처	33,000	여성 매직셋팅 시그니처or산성펌	110,000
뿌리탈색 스탠다드	22,000	스페셜디자인	기존메뉴에 10,000씩 추가
뿌리탈색 시그니처	33,000	여성 염색 스탠다드	44,000
부분뿌리 펌	22,000	여성 염색 시그니처	66,000
뿌리 펌	33,000	여성 탈색 스탠다드	44,000
애드스페셜	33,000	여성 탈색 시그니처	66,000
CMC풀케어	55,000	여성 매니큐어	44,000
무코타클리닉	77,000	남성 디자인펌	33,000
신데렐라클리닉	154,000	남성 볼륨매직	55,000
스켈링	22,000	남성 호일펌	55,000
스켈프케어	33,000	남성 스프인스왈로펌	55,000
딥스켈프케어	44,000	남성 스페셜디자인	기존메뉴에 10,000씩 추가
남성 염색 스탠다드	33,000	남성 탈색 스탠다드	33,000
남성 염색 시그니처	44,000	남성 탈색 시그니처	44,000
남성 염색 새치커버 스탠다드	22,000		
남성 염색 새치커버 시그니처	33,000		

<수령확인서-가맹점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정보공개서 작성일: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 III.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I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프로그램

상기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본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2 항의 따른 자문을 받는 등 당 가맹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 복사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귀사에게 본 정보공개서를 신속히 반환한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일자

: 20 년 월 일

가맹 본부

: (주)토리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비밀유지약약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비밀유지약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는 2 부가 작성되어 양당사자가 1 부씩 보관합니다.)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정보공개서 작성일 :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 III.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I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 프로그램

상기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본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2 항의 따른 자문을 받는 등 당 가맹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 복사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귀사에게 본 정보공개서를 신속히 반환한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일자 : 20 년 월 일

가맹 본부 : (주)토리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비밀유지약약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비밀유지약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는 2 부가 작성되어 양당사자가 1 부씩 보관합니다.)